

의안번호	2210342
의 퇴 인	임미애 의원
회 답 일	2025. 5. 19.
추계번호	25E27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69조의5 신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대상토지) 인증사업자가 유기농산물¹⁾·무농약농산물²⁾을 재배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 - (감면내용) 대상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1) 3년 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2)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2	안 제69조의6 신설 (농지집적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집적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대상토지)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따라 농업인 등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하려는 농지 - (감면내용) 대상 농지의 연접농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3	안 제69조의7 신설 (임차농업인에게 매각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임차농업인에게 매각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감면내용)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9조의5 신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9조의6 신설 (농지집적화 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3	안 제69조의7 신설 (임차농업인에게 매각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①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②농지집적화 농지, ③임차농업인에게 매각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설할 경우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감면의 대상이 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농지집적화 농지, 임차농업인에게 매각한 농지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감면대상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차익 등을 추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액 규모를 계산해야 함
 - 그러나 개정안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예상되는 양도차익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전망할 수 없어 세수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어려움
 -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의 경우, 재배농지 중 10년 이상 임대된 농지 또는 무상제공된 농지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며, 농지집적화 농지와 임차농업인에게 매각한 농지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
- ※ 참고로 2022~2024년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농산물 재배농지 면적은 다음과 같음

[표 1]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현황

(단위: 10,000㎡)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전국	39,625	37,825	37,617	30,503	31,587	30,548
－ 서울	0	0	0	19	16	15
－ 부산	1	1	1	39	40	40
－ 대구	13	28	22	24	39	46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 인천	52	53	53	472	489	584
- 광주	102	100	83	391	413	419
- 대전	3	3	4	14	12	13
- 울산	3	4	5	89	99	90
- 세종	17	20	25	97	91	82
- 경기	1,433	1,296	1,301	3,639	3,944	4,033
- 강원	1,599	1,596	1,635	2,035	1,984	2,000
- 충북	1,695	1,634	1,647	1,247	1,256	1,248
- 충남	2,785	2,815	2,741	1,924	2,050	1,813
- 전북	2,472	2,570	2,805	2,738	2,438	2,116
- 전남	24,792	22,931	22,424	11,490	12,608	11,870
- 경북	1,178	1,153	1,154	2,233	2,311	2,418
- 경남	2,269	2,360	2,434	2,917	2,714	2,687
- 제주	1,212	1,262	1,284	1,135	1,082	1,073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enviagro.go.kr)

- 한편 감면대상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할 소득 규모 등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취득·양도가액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이를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